

## 2014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4. 12. 22. 11:00
- 장소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 : 윤영우(이사-이사장대행), 고옥심(이사), 장기수(이사), 김미영(유제열이사대행), 박철웅(이사), 김혜원(이사), 이상백(이종원이사대행), 송태화(이사), 강정길(이사), 윤정혜(황귀남이사대행), 허철희(감사), 허영(감사)

###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입니다. 먼저, 본원의 이사장님이시며, 행정부지사님이신 송석두 이사장님께서 예기치 못한 업무가 발생되어 제5차 임시이사회를 주재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정관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호에 의거(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직무대행으로 2015년도 청소년진흥원 제5차 임시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원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실장 이재기입니다.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 그리고 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정관 제17조에 의해 재적이사 12명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사장님이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대행하여 도 여성가족 정책관님께서 제 5차 임시 이사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시로 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도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의 2014년도 제5차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천안에 오니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네. 이때쯤 되면은 교수신문에서 금년도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뭐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금년도에 사자성어가 될줄 아세요 교수님? 보셨어요?

이사 박철웅

아니요 못봤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못보셨지요.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금년도 사자성어가, 지록위마라고 썼더라고요. 사슴을 가리키면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답니다. 왜 그말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밑에를 쪽 읽어봤더니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세상이 됐다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다고그러는데 주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주로 금년한 해 우리나라가 진실을 가리고 있어서 응? 가짜를 이렇게 뭐하다보니까 사실은 지록위마를 보니까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 밑에 진시황이 반란을 꾀하는 내시들이 있었는가봐. 내시들중에는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죽고나니까 반란을 꾀하기 위해서 내시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해놨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하고서 자기가 거짓으로 사슴을 말이라고 했는데 반응이 나타나면은 저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슴이지. 이 말을 하면 그런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응?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록위마가. 우리나라가 지금의 시대가 교수님들이 표현한걸 보니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어. 아침에 본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5차 우리 그 청소년진흥원 이사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관이라든지 바뀌고 예산이라든지 어느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

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심도 있는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회 진행은 먼저 보고안건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심의·의결 안건은 제1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과 제2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제3호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4호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5호에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안), 제6호에 업무용차량관리규정 제정(안), 제7호에 2015년 급여인상지급(안), 제8호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호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이사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제1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연장계획과 제2호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안건인데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온 저 김미영, 김미영 이사님

이사 김미영(이사 유제열 대행)

안녕하세요 충남지방경찰청 김미영 경사입니다. 예, 원래 여성청소년 과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대리 참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보고해 주시죠.

이사 장기수(원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사회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진흥원 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기가 너무 악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이렇게 악천후를 뚫고서 이사회에 참석해주셔서 진흥원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감동의 이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안전이 좀 많은데요. 오늘 안전 중에는 업무 관련된 안전도 있고 사업 안전도 있고 예산 안전도 있는데요, 그동안 2~3개월 과정 속에서 감사나 예산실에 우리 진흥원에 청소년진흥원 발전과 청소년 발전에 앞장서서 힘을 실어주신 우리 운영우 정책관님, 허영 팀장님, 기노성 주무관님한테 이 자리를 비롯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예산확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진흥원 식구들, 가족모두가 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안전 첫 번째는 사무실 임대차연장계획입니다. 사무실 임대차 관련해서 동일 조건에서 2016년 1월 19일까지 1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관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정이 잡힌게 없어서 가급적이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어떤 결정이 됐을 경우, 그 결정 이후에, 가능하면 그 결정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1년 간 좀 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저희가 2015년에 학교박지원 관련된 사업이 됐고, 또 확장되고 시범사업에서 14개 시·군과 우리 진흥원에 15개 센터가 운영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교박지원 관련된 법령이 2015년 5월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층에 일부 공간을 추가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2호 보고 안전은 2015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사업계획은 보고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별첨 책자를 보아주시고요 보시다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해서 보고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안전 관련해서는 보고안전에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 운영우(이사장 대행)

보고안전 1,2안 까지만.

이사 장기수(원장)

예 그 두 가지 안전 이렇게 하고 질문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혹시 저기 원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사님들 우리 저기 궁금한 사항 임대차 안전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업무 세부계획,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별도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앞에 나와있고, 임대차는 금년도 몇 프로 올려줍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인상 없이 재계약 할 계획입니다.

이사 송태화

예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가 공간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정도. 내포로 적정 공간을 찾아서 가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안아산 그 관련되서 배방에 천안·아산시와 충청남도가 협업을 해서 정보문화센터를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에서는 정보문화센터를 건립 시기에 그 공간에 청소년진흥원이 입주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주셔서요, 일단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 2안. 1안 일정공간을 찾아서 가는 안이 있고요, 2번째 안은 천안아산 정보문화센터에 ktx역 근처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 공간에 저희 공간을 확보해주시겠다고 하고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이후에는 1월초에 천안시와 아산시, 충청남도 와 몇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 2가지 안전으로 검토와 협의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청소년진흥원이 내포로 가야한다는 당초 계획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포로 가줘야지

기관이 운영이 되는거지 지역을 위해서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나중에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신걸로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지금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좀 잘못된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부의안건으로 올려야지 2014년결 업무성과를 보고하면은 당연히 보고건이예요. 근데 사업계획을 보고를 한다하고서 예산을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보고건으로 상정을 해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또 다른의원님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1안하고 2안.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 박철웅

참고로 원칙은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대로 그 후에는 더 이상 내포를 가느냐 안가느냐 그문제 때문에 진흥원에 바른소리 한번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탁을 꼭 좀. 3층 임대차가 학교밖지원센터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요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가 생겼을 때 이 센터설립의 목표를 가장충실하게 구현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포신도시 이전부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조금 분리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좀.

만약에 이제 활동진흥원을 여기 센터로 지정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 어 수요자 관점에서 공급을 정하고 그래서 원칙은 가능한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방안을 때에 따라서는 분리되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보고건을 예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송태화 이사님께서 한번 내포 이전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건하고, 박철웅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저기 어떤 그 기관 이런 것들 해가면 다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네 없습니다.

이사 송태화

이따가 말씀을 하죠. 업무계획을 지금 또 업무보고도 끝나요? 2015년도 업무계획을? 자료로?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아니 책자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이사 송태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2015년도꺼를 업무보고형식으로 의견을 시켜버리면은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뒤에가서 얘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지금.

이사 장기수(원장)

그러면은 기본사업계획이 거의 인제 사실은 연차별로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지 변화는 좀 없는 사항들입니다. 예산에 사업별로 예산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의견을 주시면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여가부 지정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에서의 그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고 라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보고를 예산 보고와 같이 병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효율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저기 업무개략적인건 한번 지금 들어봤습면 합시다만.

이사 송태화

아니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고 보고안건 끝나게 되면 뒤에가서 이걸 다시 언급을 하게 되면 이걸 뒤엎는 문제가 생기게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 건을 전체적으로 의결을 시키자. 이걸 지금 하면 확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손을 못대는 거죠.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건드립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그럼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하죠?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사업별로 지금 뒤에 명기가 돼있거든요? 그거를 그 때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의 건이지 의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송태화

다만 내년부터는 이 업무보고는 뒤에 부의안건입니다. 뒤에 이사회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예산까지 승인하면은 돈만 승인하는 건 이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는 겁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다 끝나고나서 개략적인거 우리팀장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개략적인거 설명을.

이사 송태화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는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수정시킬 수 있는걸.



이사 박철웅

이걸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맞는 말씀 이렇게 가야 되겠다. 2014년도 사업결과내용 보고 중에 2015년도 세부 계획과 관련되어서라면 예산하고 결부해서, 그래서 보고의 건 하나 나왔으니깐 이것을 의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고의 건 두 번째를 그 우리 9번 안건 있지않습니까 부의안건에. 보면은 세부사업계획인 본예산 의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네 저희 9호 안건을 본예산 및 사업예산에서 그 사업 심의를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 해 주신 결 반영을 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이사님 안계신 걸로 질의답변을 토론을 끝으로 1,2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상정 안건에 대해서 1,2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심의·의결 안건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과 인사규정? 인사규정(안) 그 다음에 제3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복무규정일부 개정안, 직원평정규

정 및 일부 개정(안), 6호에 업무용차량관리규정 제정(안), 제7호에 2015년도 급여 인상 지급(안) 및 제8호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호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에 제1호에서 9호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네 의안번호 제 1호..

이사 송태화

잠깐만요 자료가 사전에 갔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안건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바로 토론으로 가시면, 다보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사 장기수(원장)

간략하게. 예. 그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행정직 직원 일명 추가 확보와 상담복지센터 일명 추가확보로 나뉩니다. 저희 지금 충남청소년진흥원은 행정실장과 행정지원실 팀장만 있지 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 센터에서 일명씩 그분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직원실 고유업무를 지금 팀장님 혼자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직 정원 인력을 증원을 하는 안이고요. 또 하나는 상담복지센터, 아까도 박철웅 이사님 말씀해주셨듯이 자립지원팀이라고 학교밖지원센터를 총괄지원하고 업무를 하는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팀 전원이 비정규직으로, 사업계약직이다보니까 팀장님의 잦은 이직에 의해서 업무자체를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팀장님이라도 정규직화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실제로 자립지원팀이 올해 시군에 다섯 센터에서 내년에 14개 센터로 확장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세배이상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가장 좋은 것은 다섯분이 정규직화 돼서 도의 기능을 좀 강화하면 좋겠으나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자만이라도 정원을 좀 확보하는 안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그 저희가 팀장, 저희가 운영규정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용어가 바뀐 부분도 있고 또 감사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자체, 내년에 이사회 때는 정말 이 진흥원 전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내부 TF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필요한 사항을 일부를 좀 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행정지원 실장님이랑 실·센터님이 부임한지 5개월정도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바로인해서 몇 가지 정원 연장이라든지, 팀장직급 규정이라든지 징계양정 규정 완화라든지 이러한 걸로 필요한 것을 일단은 안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저희가 충남 청소년진흥원이 설립이후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금이 무려 7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에 대해서 미지급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2014년 3% 여가부 지침 사항과 2015년 여가부에 추가인상(안) 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련했고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과 별도 규정을 두는 안입니다. 올해 시간외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장을 했고요, 비정규직 기간제 사업직 직원분들 다섯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입니다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안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있고요 경조사휴가에 대한 휴일 산입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입니다 직원 평정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인에 대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협화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개를 하되, 공개의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당해년도 종합평점과 가감점내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제6호 저희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그동안 업무용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우 정책관님 이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2015년도에는 엑센트 정도의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규정을 두기위한 의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5개 시·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니까 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은 개인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었고 실제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업무용 차량 하나를 직원들이 이용할 차량 엑센트 정도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입니다.

다음은 7호의 의안입니다 2015년도 급여인상 지급(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 진흥원은 그동안 7년정도 임금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진흥원 자체에 안정화를 꾀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좀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사업규정상 형평을 좀 맞추기도 하고 그동안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보필성 수당을 급량비와 시간외 수당, 그리고 급식비를 지급하는 (안)이고요, 성과급 지급 한도가 그동안 평균0.99에 불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제도는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고 이후에 예산에 사업에 맞춰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관련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8호 안건입니다 201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리추경의 성격이고요 수탁사업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세부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이사회에 제출을 합니다. 기정 예산대비 사천오백팔십칠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도비 보조금, 타기관 지원사업, 수익자 관련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세출관련해서는 행정지원실 소관 인건비 부족분 반영, 일반운영비 절감에서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중독상담상담사 부족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사랑의교실 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서는 수탁이 좀 늦게 왔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동아리축제 신규사업을 진행하겠고요, 아르헨티나 청소년 고국방문 수탁사업을 오늘부터 2박3일간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있어서 반영해서 2014년도 정리추경하는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전년도 편성액에 준하여 충청남도에서 편성, 확정될 예산과 여성가족부의 지침,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을 준용한 진흥원 예산편성지침, 진흥원 각종 규제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재정규모가 27억 3천 32,200원 전년도 대비 5.5% 증가할 예상입니다. 운영비가 좀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동안에 양센터에서 일정정도 전용해서 쓰던 것을 센터로 다시 환원하고 행정직은 행정지원실 예산으로, 센터는 센터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센터별 주요 편성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실 포함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및 성문화센터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관으로는 지역사회안전망운영 오백만원,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칠백만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1억 9천만원, 긴급구조 및 임시보호소 운영, 숫자는 명기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명만 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연구사업, 찾아가는 관리 상담,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 117학교폭력전담사업운영,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원 상담원 인력풀운영, 위기청소년지도자 양성사업, 학교밖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학교 폭력 대응 솔리언 포레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인터넷 치유 캠프운영,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인터넷중독예방·해소 협력기관사업, 사랑의교실 운영, 수익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연구 조사 및 재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청소년 활동 홍보지원 및 정보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지원,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구축, 운영전략 시스템 관리 및 자체 평가 개선사업,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사업, 봉사활동 터전관리 및 전산망 운영,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대회,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사업, 충청남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청소년 해외 선진 문화탐방, 청소년 문화교류, 서울시와의 교류입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국제 청소년 자원 봉사 지원, 제 17회 청소년 자원 봉사 대회, 반납금은 국도비 관련해서는 모두 반납금으로 잡았습니다.

별책2,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과 별책3, 2015년도 본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주시면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개별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안건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사님들이 별도로 이사회에 주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요. 사업계획에 반영 하기도 하고 2015년 첫 번째 이사회 때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안한 각 안전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저기 우리 제기된 심의 안전별로 잘 듣고 인사규정이면 인사규정, 보수규정이면 보수규정.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원장의 저기 연봉에 대해서는 원장에 대한 연봉은 도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원장에 대한 연봉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겁니다. 조정해서 우리가 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저기 혁신담당관실에서 이사람 연봉을 얼마를 책정 한다고 차감을 하면 차감한다고. 거기에 맞게 결정이 나옵니다. 원장에 대해서는 연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인건비를 그동안 몇 년간 동결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에 6%가 반영이 됐는데 연봉제에 해당하는 센터장급들은 여기에서 연봉에 저기 이번에 우리 삽입된 교통비와 급식비는 연봉에 포함된 것이고, 센터장들은 거기에 연봉 안에.

## 이재기행정지원실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포함안되요? 포함 되는 걸로. 우리 감사, 그렇지?

## 감사 허영

포함 안되는걸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인건비 기준 월봉에 월봉 산정 기준에 대해 인건비가 다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통비라던가 정액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저번에 저기 급여인상관련해가지고 결재 받을 때 혁신관리실에 협조 받는데 그 부분은 포함 않는걸로.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확실히. 확실히 알아보고.

## 이사 송태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규정상에는 진흥원에 애당초 규정에는 넘어갈때 제수당과 충당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거든요. 32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수 규정상에서 당초에 현행은 연봉에는 제수당과 법정충당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에는 그냥 지금 문구도 지금 잘못 만들었지만 제수당과 충당금을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는 법정 충당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 거를 갖다가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가면 안되는겁니다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외 연봉에는 제수당과 법정 충당금을 포함한다. 이때 연봉에는 제수당과 퇴직금의 충당금은 제외한다.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죠. 잘못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연봉을 그 연봉제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팀장님들은 전부다 뒤에 가면은 연봉에 상한과 하한을 넣었다고요. 그러고서 지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걸 다 넣는다고. 연봉에는 기본 제수당을 다 포함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는 어떤 제수당은 포함해야 맞는데. 누구한테 가서 야 연봉이 얼마나 예 오천만원입니다. 그것이 연봉이 아니거든요 수당을 다 포함한 게 연봉제지. 그렇다고 한쪽에서 수당을 감춰놓고. 또한가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약 4억이라는 돈이, 청소년 진흥원에 지금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우리 그 팀장님들이나 원장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는 걸 나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수혜를 주고 전체적으로 제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걸 한다면은 연봉제의 개념에서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계급적으로 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체적으로 연봉에 계약하는 것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014년, 2013년 이렇게 보면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실·센터장 빼고 정규직 중에 1년이 안된 사람이

11명입니다. 가장 결정적이 이유가 저희들 그 급여가, 열악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이번에 그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청소년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해갖고 급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봉을 인상 하다보니까 기본연봉을 인상하면은 그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니까. 현재 저희 타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보조 이런 부분을 신설 한 겁니다. 기본연봉을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 이사 송태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님들과 원장님들에 대한 연봉제에 대한 개념에서는. 지금 34페이지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에 대한 숫자는 더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조절하면 되지, 점차로 가는 방법을 저도 찬성한다 이거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많은 급여를 올려놓고 그걸로 인해서 이직이 안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연봉제로 가지 말고 다른 제도로 간다든지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사 박철웅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송태화 이사님과 같이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참고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여기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들의 삶의 질, 그들에 부과된 업무의 양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연봉에 포함을 시키는 것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다르게 감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임원에 적용과 직원에 적용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진흥원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원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분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안이, 이 안이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다면은 방금 그 송태화 이사님이 지적하신대로 다 포함시키지 않고 다르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감사 허영



좁전에 제가 그 좁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는 운영 기관을 자체내에서 그 혁신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의 월봉 산정 기준에 의한 인건비 기본급, 봉급, 통상적 수당은 기초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이걸 기타조 기타수당이죠 가족수당 뭐 이런거.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근본적으로 연봉제는 다 포함하는거여. 이게 그러니까 연봉을 받는데 이상은 어려운거거든? 그래서 연봉 책정이 어려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장들은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은 다같이 포함해서 해야하고 공무원들 규정에 따른다면은.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은 왜 10시간에서 15시간이여 기본급이 10시간이거든 이게 공무원 지침에?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예예 이것이 공무원 지침대로 이게 가야지 열다섯시간 하면 이게 법을 바뀌서는 이게 그냥 시간에 열시간 열다섯시간을 기본지급으로 하고 다섯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윤정혜(황귀남 이사 대행)

저기 기본적으로 제 전공이 나와서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는게 지금 진흥원에 모든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로자기 때문에 열시간이 넘는 근로를 한다고해서 시간근무를 한다고 해서 뭐 범위반도 아니고요. 실제로 열다섯시간 정도 하신다면 그걸 주시는게 우리 법을 지키시는거죠. 그래서 아마 진흥원의 그런 현실을 간과하신거 아닌가요?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이제 저희 산화기관에 제한되었었는데 그동안 그 산화기관에 ~를 통해서 다양한 수당을 통해서 어 연봉을 피해 간다라는 것은 문제 시 있을시 문제의 규정을 말씀드리는데 거든요. 그런데 보면 진흥원은 감사에서 오히려 수당이 없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적받은 기관이예요 예를들면은 저희는 올해 총수당 10시간이 전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본급으로 받아야 하는 기본수당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금도 동결된 상태에서 보내온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기본연봉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게 맞습니다. 저희 체계를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제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진흥원 운영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겠다. 예산이 2,3년 동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감안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차피 올해 특이하게 열심히 도에서 도와주지 상황에서 직원연봉을 올리게 되면은 지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수당을 심사를 해서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조절을 할수 있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진흥원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구요. 지금 현재 연봉 운영계획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황상 수당운영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회지침에서 아까 시간 외수당하고 그 우리 급식비 하고 급량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데 거든요. 다른 데는 다양한 수당을 정해서 이중적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수당이 정액이기 때문에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기본등급이 6%라고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2014년에 여러 인건비중에서 추가 인건비는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이 없어서 10월까지 인상을 못해서 3개월 임시적으로 그거를 인상해 줬었습니다. 올해 실질적 연봉은 3% 이상입니다. 그 3%로도 여가부에서 아예 여가부에서 강제적으로 추가로 준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종사자들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도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지원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지원이 안된 것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사 송태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게 뭐냐면은 봉급을 올린다는게 반대하는게 아니라 수당을 월급에서 포함된다는게 중요한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예산에서 안준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왜냐면 여기 보수규정에 월급 준다 안준다 이건 예산에 통과한 사안이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안줍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결국은 열악해서 지금까지 못준 기본봉급을 6%올리고 시간외수당을 신설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연봉을 올려서 그래서 핸들링을 하는게 맞지 이거를 놔두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안주고 한다. 이 얘기는 이사회에서 하라고 한 것을 했다 안했다 뒤집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수당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월급에서 포함을 해서 수당을 주고 기본급을 올려주고. 그대신에 매년 연봉계약을 조절을 하라 이거죠. 재원에 따라서. 그러면 되지 이걸 별도로 수당을 따로 빼서 간다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이사 장기수(원장)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수당을 주는거고요. 연봉도 제대로 주는게 맞는데, 저희 예산이 우리 송태화 이사님처럼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거고 그런데 실제로 진흥원 입장에선 불안한거예요. 지금은 법정 수당을 주지 않아도 똑같은거거든요 그 때문에 안정적 연봉을 맞춰서 기본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그러기엔 제가 봤을 땐 불안하다 이거죠 어쨌건 진흥원이 그동안 도나 의회와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서 일정정도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수당 못주는 건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 이사 고옥심

그렇다고해서 연봉제를 이탈을 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가면 말이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장기수(원장)

아 그게 아닙니다. 저희 제안 안을 보시면요 이탈을 하는게 아니구요 없던 수당을 신설하는 거고요

### 이사 고옥심

그 모든 수당이 연봉제 안에 포함이 되있는 거고 연봉을 기본으로 알아야 수당이 되지 아까 말씀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서..

이사 장기수(원장)

아 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연봉제는 연봉제에 포함된 수당 저희는 포함 한 거구요 연봉제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 별도로 만든거거든요.

이사 윤정혜(황귀남 이사 대행)

그러면 원장님 정확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하고 급량비 두 가진데 급량비는 실비차원이고 사실 2,3번 두개만 이번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만들었던거고 상황이 안되면 안줄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 만드셨다는거죠.

이사 장기수(원장)

그렇죠 조절할수 있다라고.

이사 윤정혜(황귀남 이사 대행)

그니까 내년에는 이제 낮출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랬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금액자체가.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건 아니고요 윤정혜이사가 잘 못알아듣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가 아니고 정액급식비하고 이런거는 만들면은 주는건 주는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봉에 포함이 된다 이 내용이고. 무슨말이냐면 그니까 원장은 지난년도 일을 한거 가지고 A등급을 주느냐 B등급을 주느냐 C등급을 주느냐 가지고 연봉이 결정이 되거든 무슨말인가 알아들었죠? 나같은 경우는 서기관 급에서 과장 급이라 한다면은 S등급이냐 A등급이냐에 따라서 연봉이 다 결정이 돼서 그내용에 의해서 성과평과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거기서 쪼개서 주는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사 송태화

이사님, 감사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포함이 안되요? 연봉에? 다 빠지는거죠?

이사 윤정혜(황귀남 이사 대행)

일단 일단 연봉에서 빠지는 새로운 수당들이 어쨌든 앞으로 쪽 지급 되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해야죠.

이사 송태화

지금 이 얘기를 할때에는 도에서 하는 걸 얘기 하는거는 잘못된거고 일단은 우리 이사님 지금 그렇다고 이걸 포함시켜야지 연봉제를 공무원 기준으로 가라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연봉제에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 말뜻인 거죠. 그런데 그 연봉제를 놔두고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연봉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봉제를 연봉가지고 조절하면 되지 이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으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연봉을 줄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에 혼선을. 자꾸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연봉제는 그리고 얼마든지 조절 할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못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원장님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되면은 모든 수당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수당이 많아요. 공무원들 주는 수당들이 다 만들 수 있는거예요. 그런 수당들은 그것 못만든다는게 아니라 이사회 보고만 하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금액면에서 재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 연봉제 자체를 극복하라는 얘기지 그걸 자꾸 이거를 기본급하고 막 변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연봉에 개념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예 연봉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게 뭐냐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진흥원에 산하기관 지침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뭘 무한정으로 만들거나 신설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다른 기관들은 수당을 줄이라 하는거고요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얘기하다보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할거 같은데 저 지금 다 직원들에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연봉제입니까 호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전부 연봉제입니다.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전부다 연봉제면 제수당이 포함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 연봉제에 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이사회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때 차액은 주는걸로 이렇게 가야겠네.

이사 장기수(원장)

지금 관련해서 사실은 토론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예산에서. 그리고 사실은 얘기할게 뭐냐면 제가 기본수당을 법적 효력이 넘친다고 웬만하면 지급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기본수당에 대해선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법적 수당을 아예 안주는걸로 알거든요. 저희는 시간외수당이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이사 송태화

어려운건 알겠는데 자꾸 원장님 상황이 이러는데 자꾸 수당가지고 이러시면 제가 한 말 이해하시죠?

이사 장기수(원장)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는 시·군 임금의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우

리가 뭐 시급 뭐 높게 받거나 이렇게 앉잖아요 지금. 기본연봉 올릴려면 워낙 오랫동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기본 법적 6%이상 관련해서도 10%, 12% 정상화 한다는 계획에 대해 승인이 될지가 어렵고 그 외에 지금 도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거거든요. 7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상폭을 공무원 인상폭으로, 그 이상 인상을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인상 이상을 넘지 말라는거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영원히 시군의 60%, 70% 받고 일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니까 경력 있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그럼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이사님 저희 거기 기획관리실에서 온 2014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근거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월봉의 선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선택적복리후생비 모두 수당으로 포함이 되고 저희들 한 통근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그런 부분은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상담복지센터, 시·군센터는 호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봉잡니다.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호봉제는 연봉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연봉제는 이게 연봉에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 이게 문제인거야.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여수준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준의 90%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6~70%밖에 안됐습니다. 급여수준이. 그러다보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된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봉이 올라갔다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게 되어있는데 6년동안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시다. 연봉이 기형적으로 되어있다는거죠. 지금 수당이 직원들 밑에 직원들 올라가는게 지금 20%정도 되는겁니다. 15~20%.

## 이사 송태화

지금 이문제를 내놓고는 봉급을 호봉제로 할건지 연봉제로 할건지는 근본적으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걸 유보합시다. 그렇게 진행못하겠다 하면은 연봉제를 아예 통과를 시키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자는거죠. 계속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론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에 대한 체계를 부정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간다든지 연봉제가면 연봉제를 따라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 6년간 연봉이 안올랐다 이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저희들이 봉급을 안올린다는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태화 이사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연봉제나 호봉제나 그런 얘기를 토론을 3,4년 간 끊임없이 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예산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나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어떤 그 호봉제든 연봉제든 의미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산실에. 그래서 작년대비 그리고 올해 1억 1천 8백인데, 5억 6천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때 연봉에 대한 인상과 연봉 체계에 대한 변화, 인상률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할 때 그것을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던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줄 것이냐. 그런 우리 기본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여가부에서 정한 3%로 하고 수당을 최소 수당으로 신설을 해서 그나마 우리도 직원들한테 사례를 해주자 이런 취지 였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 말씀 주셨던 연봉제나 호봉제나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 희망으로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해야 하고 실제로 TF팀을 꾸려서 일년 정도를 해야 이 체계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드리면은.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해서 이것을 처음에 호봉, 직원들에 대한 호봉제를 만들 것



이고 팀장들한테는 연봉제로 가야한다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연봉제한테 지금 뭐 교통비라든지 제수당이 포함이 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연봉을 만들고 통과시키는게 낫지, 호봉제로 간다면 직원들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켜서 연봉제로 만드는게 낫지 않은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사 장기수(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사님 말씀 존중은 하는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선 직원들이 최대한, 이러한 급여조건을 좀 낮게 해주는 게 원장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속에서 한달동안 예산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 월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다만 내년 이사회에는 제가 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근본적인 것을 제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수정제안을 좀 드리는거거든요, 사실 이게 2월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행정지원실이라든지 이것이 업무를 볼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또 2개월 3개월 또 다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 이사 송태화

지금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행정실장이나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 연봉이 상한액이 3천에서 4천으로 올라가고 4천에서 천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리고 싶으면 연봉을 올리면 되잖아요. 기본연봉에다 기본수당이라든지 제수당을 포함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연봉 사항을 천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 확보 내에서 연봉을 포함시켜서 올리면 되는데.

### 이사 장기수(원장)

자 그러니까 실·센터장님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정해놓으면 이 이상의 퍼센테이지는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매년 공무원인상률 적용을 받는데 그걸 매년 예산실에서 확보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합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 이사 송태화

그러니까 기본연봉 플러스 수당이라는게 연봉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수당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해서 2,200에서 5,000까지 지금 배정되어 있잖아요. 연봉의 기준표가. 그러면 그 천만원 내에서 그 여가까지 줄 수 있는 수당을 통과시켜서 줄 수가 있는건데, 이걸 따로따로 이거는 이거대로 측정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측정하면 따로따로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가 뭐냐면요 일정정도 정상화된 이후에 정상적이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6~7년 정도 이 진흥원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일정 흐름을 올바르게 가기위한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이나 이런 것을 12%이상 인상한다 하면은 이게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들은 영원히 뒤쳐진 상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혜원 이사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두분 말씀이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데 두분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어 공무원 그 인상기준에 상한선을 넘고 있나요? 만약에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면 지금 상한선을 넘는다고 대답하고 계신건지.

####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연봉 그 거기 저희가 1.7% 인상입니다.

#### 김혜원 이사

그거를 수당 포함하면 인상률이 넘어가나요? 그 외 수당을 다 집어 넣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이번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갖고 청소년진흥원만 이번에 다 별도로 가라고 했습니다.

김혜원 이사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분명히 대답을 받아야 하는게 도저히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거죠.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요거 말입니까?

김혜원 이사

내년도 예산에. 연봉이 올라가면 조절을 해서 요정도 까지만 올리기로 했고, 그걸 특별히 받아내셨고, 그 이상은 힘들다. 이 말씀이신거죠.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저기 저희들이 잘 아셔야 하는게 저기 도 출연기관이다보니까 도예산실이라든지 도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을 연봉에 넣어갖고 연봉을 올리기가 참 꺾끄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김혜원 이사

그렇게 저희가 제안 하는 것들이 불가능 하다.

송태화 이사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 운영우 정책관님 나와계시지만, 지금 이 돈을 확보해서 편법적인 수당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요 기본급을 6% 올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 통제를 받죠. 인금 인상부분이니까. 근데 수당은 이미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가는 겁니다. 다만 봉급 인상부분을 얼마큼 더 줄거나 하는 부분을 통제하는거지.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돼요. 여기 지금 담당 정책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진흥원에 돈을 줄 때 인건비를 얼마, 사무비를 얼마.

인건비부분을 올려야 한다. 왜 올려야 하나, 정부가 4% 올린다, 그럼 진흥원도 4% 올린다. 이거잖아요 기본은. 수당은 올라가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다, 그럼 똑같이 주는 거지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거면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이사 장기수(위원장)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봉에 포함되면 자연증가분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끊임 없어요. 근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를 하는거고,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이 늘어나거나 증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동의를 안해주는. 저희가 예산 두 군데를 결제를 받거든요. 이사회 통과과 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을 오늘 중에 결제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2개 정도를 넣어서 연봉에 부담을 줄인거죠.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청소년 어 저기 진흥원이. 예 말씀하세요.

###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제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느끼기는 6년 차의 어려움 이 부분을 도에서 인정을 해줘서 수당을 부분을 연봉 부분에서 기본급여하고 수당을 제외하고 연봉을 올려주고 수당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가급적 뭘 해줄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저는 32쪽 아까 송태화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에는 제수당과 법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 부분을 언뜻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수당과 법정충당금을 제외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규정이 있고 없고 간에 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돼있구요. 어느 정도는..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열약해요 열약해가지고 저희가 1.7%를 당초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원장님 오셔서 상당히 어렵다고해서 직원들에 대한 것이 6%를 지금 올려놨어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사 장기수(원장)

3%입니다.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이번거 넣으면 6%지. 6%가 넘지. 채수당을 넣으면은. 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 생각은 저희가 일단은 좀 올려줘야 하는데 어떠한 합리적인 선이 될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본건에 대해서 올라와있는 예산편성을 어느정도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사업 이런 어떤 규정 부분들이 9월이나 예산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되었으면 문제가 됐을텐데, 지금 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도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준거고. 그렇다면은 본건에대해서 개정에, 31쪽 보면은 이 개정에 대해서 뭐 한정을 지어가지고 본건에 대한 것을 그냥 통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뭐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왜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냐면은 봉급에 대한 채수당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것이지 그걸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방망이 뚜드려서 해주지. 그래서 지금 보수규정 그것이 채수당을 연봉제에서는 포함하게 되어있는데 정부지침에 요 지금 그 지침을 거기서 뺀다 이러니까 그 지침이 위반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거지. 딴 뜻이 아니거든. 방망이 뚜드려도 말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나갈거냐. 그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사회라고 해가지구요 상위법위반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니 오늘 이렇게 올려주는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나쁘지 않은데 규정을 지켜가며 봉급을 올려주자는거지. 그거 때문에 송태화이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이사회에서.

이사 장기수(원장)

규정을 지킨겁니다 이사님.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지금 제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데 제수당을 빼놓고서 지금 아니 그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는데, 포함된 수당은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규정을 안지킨게 아니고요,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그럼 규정을 지켜서 방망이 두드리면 교통비나 급식비는 못하거든.

이사 장기수(원장)

규정과 지침대로 지킨거예요.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연봉제도 그래?

감사 허영

연봉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월봉액에 포함되는.. 그런데 기타수당 요거 가족수당, 통근수당, 시간외수당 뭐 이런거는.

이사 윤희우(이사장 대행)

아니 그건빠지고 급량비나 이런것들이.

이사 장기수(원장)

정확하게 지침을 다 지킨거구요.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요렇게 합시다. 송이사님이 그 저기 제수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같은 경우는 연봉에 다 들어 있거든. 공무원연봉제에는 그게 다 들어 있거든. 그래서 예 성과급도 들어있어요. 성과급 예예예. 다 들어있어 공무원 기준이면. 그리구서 이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별도의 이렇게 한다면은 편법이 되거든. 이게 감사원감사나 이런거 했을 때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제수당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걸 개워내라고 하고서 이걸 이렇게 의결한다고 한다면은 이걸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주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되는게 아니라 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상위법 위반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줄건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지.

이사 장기수(원장)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완벽하게 지킨거예요. 기타수당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6%인상이 아니라 3%인상입니다. 그게.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기타수당인가 아닌가 한번 봐봐. 내가보기에 자격증 수당이나 다른걸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사 장기수(원장)

판단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기타수당 내에서 편성을 한겁니다 지금이게. 그게 정확하게 지침을 지킨거구요. 지침을 안지켰으면 싸인을 않죠.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이게 참 어려운문제네

이사 장기수(원장)

또 하나 제 소견드리면 6%인상이 아니구요 3% 인상입니다. 자 제가 부임해보니까 여가부에서 2014년도에 3%인상하라고 예산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다른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이사회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3% 인건비 인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플러스해서 3%, 3% 해서 인상하겠습니다. 해서 2015년 3% 인상입니다. 3%인상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3%, 2015년도 3%, 합이 6%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 설명드렸고 예산실에서도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신설하는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해요. 이후에 이제도가 바뀔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수당을 저기해서 그러면은 직원들 복리생활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해서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사 송태화

연봉한계액이 기본연봉입니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이사 송태화

14p연봉 한계액이 기본연봉이냐구요.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 송태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수당을 모든 수당을 빼게 된다고 하면 연봉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난 지금 이게 갈수록 진흥원에 확고히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연봉이라는 것은 이게 제수당을 뺀다구요. 지금 현시점에서에 급량비 이것만으로 앞으로 어떤 수당이 나올지 모르는데 연봉에서 빼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수당을 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빼면은.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이걸 제가 예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때 제 친구들한테..

이사 송태화

아니 법령에서 여기 진흥원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제수당과 법정 포함하라고 돼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지금 제수당을 다 뺀단말이에요 연봉에서 지금.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제수당을 수당별 제수당이 없었습니다. 시간외수당 10시간 밖에 없었고,

이사 송태화

아니 시간외수당 그런거 얘기하지말고.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과거에 없었습니다. 수당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사 송태화

아니 없는데 지금 수당을 설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봉에서 예를 들어서 상한액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 8천만원을 주고도 수당을 준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들면은 지금. 실장님도 5,500주고도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거 아닙니까. 결

국은 모든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재원을 갖다가 남들한테는 5,500이라고하고선 7,000받으면 말이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연봉에 안맞는다 이거죠.

이사 장기수(원장)

저는 빠지는거구요

이사 송태화

왜빠져요. 제수당은 원장님도 해당되는 겁니다. 시간외만 안받는거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원장님도.

이사 장기수(원장)

기존에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 송태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제수당이라는걸 내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근데 그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실·센터장이나 원장님이나 보면은 기본 하한연봉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연봉제대해서는 내가 재검토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요 관계를 우리가 당초 권고할 때 연봉제를 채용할때 센터장들하고 원장님하고 할 때 연봉제가 상한선 하한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증감률에 따라서 가야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것을 저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요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고 연봉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합시다. 토론이 되니까.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34페이지에 개정안에 이 뒷부분은 수당을 포함해서 총액연봉.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우리 저 나머지에 대해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요계 문제가 되는거 같죠. 수당에 포함되고 안되고. 저기 송의원님 그렇죠?

이사 송태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신설할 때 다 포함이 되는거죠.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예예 그러니까 제수당이나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모든수당을 다 포함하는것을 수당을 신설할 때 이사회의를결을 받기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만 빼고 어? 다음에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주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사 송태화

다만 연봉을 누가봐도 수당을 또다시 준다고 하는게 예를들어서 13만원, 13만원, 26만원 12달 곱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300이죠. 이 수당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당을 신설을 할 때는 예산 가정을 해야 되고 지침을 지켜야 되고 이사회 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 관련해서 그렇죠? 센터장님들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데요, 2년 계약직으로 오십니다. 센터장님들이요. 실질 센터장님들이 15개 시·군 뿐만 아니라 양쪽에 상담과 활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정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실·센터장님들이 시·군센터장님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80~9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센터장님들은 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정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던지 아니면은 2년 4년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있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2년 보고서, 예를 들자면 우리 현 센터장 시

에서왔습니다. 시에서 왔는데 시에서는 정년이 보장됐는데 여기 2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월급 똑같습니다. 그럼 좋은 인재가 오기위해서는 좀 조건들을 여기 이사님을 오랫동안 진흥원을 다져주셨기 때문에 송태화이사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불합리한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오죽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내년 1년 내에 제가 이사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해주시고 어떤 방식이든 이사님들 동의하는 방식 찾아내겠습니다. 저 제가 여기 왔을 때 규정도 안맞는게 맞는데 그것 손대기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조건들이.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다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내년에 분명하게 안을 내겠습니다. 그 안이 어떤 안이든 좀 설득하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당신설하기 전에 이사회를 꼭 사전에 동의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송태화

자 원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애당초 센터장들과 원장님을 공개모집할 때 연봉 상한선을 지금 오바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도 제가 문제를 안삼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센터장님 오셨어요. 지금 4,500에 기본급을 주는 게 아니라 연달아 수당을 포함해서 금액을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안맞는다는 얘기죠 연봉 개념에서. 지금 상한선이 5,500 있는데 왜 이걸 4,500으로 수당을 별도로 갈려고 하냐 이거죠.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를 원장님은 자꾸 이걸 자꾸 원한다고 달라고 하는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상한선 하한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당만큼 챙겨서 연봉 계약하면 돼요. 이거는. 왜 그걸 안하냐구요.

### 이사 장기수(원장)

실·센터장님이요? 그럼 실·센터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은 아니에요.

### 이사 송태화

원 직원들 직원들은 5,000까지 있잖아요.

이사 장기수(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저희 예산이.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원장님, 그럼 이렇게 하요. 개별로 성과급을 매겨가지고 연봉계약을 확정을 해가지고 연봉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지요.

이사 장기수(원장)

그건 전체 이사님들 생각을. 그건 제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마련하려고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런건데 범위 내에서 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거지 연봉제를 확정을 하면 되는거고 이사회 때에 표결을 시키면 되지.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6% 넘어가도 됩니까? 10~20%해도 됩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안되죠.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아니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지.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연봉에 상한선 범위 내에서 6% 오르면 어때, 7% 오르면 어때.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도에서 안주니까 그러지. 그걸

이사 송태화

아니 잠깐만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일전에 금년에는 특수한 경우 이 봉급을 올려주는 걸로 승인 받았죠? 금년에는 자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4,500을 예를 들어서 3,000에서 4,000으로 올렸어요. 천만원을. 자 승인 받았죠? 예예 자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 300해서 4,800을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에 몇프로 올라갑니까? 기본연봉 플러스 호봉이라고 하면 기본연봉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만 올라가는거지 전체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6% 아니잖아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본연봉 플러스 수당이 기본연봉이 예를 들어서 도가 방침을 줘요 2%,3%,6%. 거기 외에 수당은 안변한단 말입니다. 어쨌던 프로테이지가 10~20% 올려줬잖아요 도가. 그럼 내년에 안올라갈 걸 왜 걱정을 하난 말이에요 내말은. 말이 안맞는다 이거죠.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줄거냐 이거죠.

이사 송태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미 예산을 다 확보해줬고 올려 승인 받은거 아닙니까.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아니 승인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안해주면은 1억4천이라는 돈은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 지금 제수당이 나와 있는 예산을 받았잖아요. 1억 4천을.

이사 송태화

지금 도는 예산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여기서 운영하는 사람 센터장님과 직원들의 연봉계약과 3,500이 기본급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수당 포함해

서 4,800계약을 하면 되는거 그거를 안하고 이 원칙을 몰아가니까.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아니 그걸 도에서 못하게 하니깐 그러지요 아니 도에서 할 수 있어요?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이만큼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은 여기서 짜는 거예요.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도에서 예산을 준 것은 인정을 해서 준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사 송태화

아니예요. 포괄적으로 주는겁니다. 포괄적으로.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포괄적으로 주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범위가 되니까 준거 아닌가. 도에서 그냥 여기서 올린다고 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나하고 저기 우리하고 다시 재검하기로 하고서 제 7조 연봉계약에 대해서 뭐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이사 김혜원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저기 이사회에서 토론 및 의결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지금. 의결을 붙여야 되나요.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붙여야 합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정족수도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붙여 이걸 지금.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6명입니다. 정족수가 어떻게 돼. 정족수가 안됐는데. 아니 저기 기왕에 하실 분들은 자! 저기! 이팀장 ! 저기말이야. 이 문제에대해서는 나한테 와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좀 하지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 저기 담담 팀장이 충분히 검토를 좀해서 재수당이 어떻게 들어갈건지 좀 검토를 좀 하라니까. 자 하튼간 이문제에 대해선 나 머지를 이제 빼고서.

이사 장기수(원장)

정리 발언 이거는 송태화이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삭감되다보니까 충분히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린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산이 미리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이 충분하게 이것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하는걸로 해서 충분히 말씀 이해됩니다. 그리고 4,500에서 4,800정도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한으로 규정되게 했습니다. 연봉 하한선이구 하한선으로 해라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혁신담당관실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이걸요.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연봉에 대해서 재검토를 담당계장 해가지고.

이사 장기수(원장)



5분만 주십시오. 그럼

이사 송태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당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예전에 연봉이 3000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는 퇴직까지 포함되어있는 그런 의미 아십니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전에 예 안되었는데. 퇴직금에서 충당금은 따로 예예. 같이 갈 때는 의결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게 반반 나머지 의결이 안되면은 유보하는걸로 의견을 해주시는 걸로.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7조에 대해서는 연봉에 포함하는걸로 해주세요.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된건데 시간을 뭐 한 시간씩 끌고. 저희한테는 점심을 늦게 먹는 간단한 사항일지도 모르겠지만 직원분들한테는 몇 개월에 해당되는 저희가 다시 이사회를 하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의결사항이 다시 안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물어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포함시켜서 제수당을 모두 연봉에다가 포함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이사 장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사님들한테 뭐 어떻게 연봉제에대한 개념을 얘기하셨으니까 예그러면 동의해주신다고 서명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추론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그때가서 추후에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고치면 되잖아요.

이사 장기수(원장)

아니 지금 송태화이사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수정제안을 하신부분에 대해서 예예예 나중에 문제 된거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지금 모든 수당을 포함 한다고해서 명목을 바꾼다 이거죠 예예 그래서 거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되는겁니다. 제수당을 포함 하되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 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가야 맞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규정을 검토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이결로 하고, 내년에 연봉을 산입하는 결로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사 송태화

자 여기 이사님들도 나름대로에 이사회에 나름대로에 제3자에 욕을 머지 않아야 해 이게 왜 잘못됐는지 문제를 알아야해. 통과시킬 때 문제가 된다. 그래도 이사님들이 나름 손쓸려고 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연봉개념도 모르고 통과시키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그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받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저기 감사 안받고 그냥 가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다음번에 봉급을 다시 토해내면 그때가고 하고.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아. 나야 사유서 하나 써주면 그만이지만 징계를 받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사회 감사가 확실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담당관하고 도에서 과장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하니까 집어줬지 방망이 두드리고 갔으면은 잘못되면은 우스운꼴이 되거든. 이거 행정부지사님이셨으면 나만 깨졌어 사실은. 법적인 검토도안하고 이결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사회라고 하겠냐고.

### 이사 이상백(이종원 이사 대행)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감사님께서 법적으로 검토가 어느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사님이 법적으로 검토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거냐고.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니까 제수당에 대해서는 뺄건 빼고 들어갈건 들어가고 말씀해주셔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이해는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봉에는 포함 이 되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는 저희는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을 이거 포함해서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안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사회를 통과를 시켜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그것을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건데 여기서 무조건 안된다. 법으로 안된다 그래버리면. 도에서 그동안 검토한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 아니 이사님이 자꾸 다음에, 다음에 해라 그러면 다음에 언제 합니까 또.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가는걸로 수정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 이사 송태화

자 오케이 어려울테고 아까얘기한대로 도와고 정책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종합검토 하신다음에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걸로 저도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지만은 사실 문제가 있는거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이사님들이 제3자들이 볼 때 어느정도 집었다고는 보는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의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하자는거죠.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재검토해가지고 이사회 추가적으로 올리는 걸로 결정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는걸로.

이사 송태화

어차피 시간이 지났는데 의견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의견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되어있습니다. 지금 67페이지는 십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13만원으로 나와있구요.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규정은 13만원이구요 이번에 예산을 짜다 모자리가꼬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송태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67페이지에는 10만원 해놓고.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예산이 왜모질라?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계약직 직원을 동등한 대우를 해주다보니까요.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계약직 직원? 사업계약직, 계약직직원에 대해서는 요 정액급식비는나 교통비는 지급할수 있지 않아요?

이사 장기수(원장)

전체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대비 5,000 삭감되다 보니까 조절을 좀 한겁니다. 삭감된걸 줄이다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줄일건 줄이자 이렇게 해서.

## 이사 송대화

저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자는 별도로 얘기를 하는거고 급량비는 급량비 항목에서 나가는 거니까 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세요 이거 이렇게 나누면 시간외 막 주는거를 이렇게 가면된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더 제안하는 거는 이왕 못건들이겠다면 지금 여기서 아까얘기했듯이 시간외근무를 10시간을 공무원같이 준다 공무원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는자에게만 주도록 또 하나 여기서 시간외 근무는 공무원단가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원이 단가를 정하시죠? 그래서 15시간 이지만 공무원에 30시간을 주라는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 10시간을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기는 근무한자만을 주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을 공무원들도 단가가 8천원 9천원 만 사오천원정도 될텐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제의견입니다.

그답에 연봉계약에서 팀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팀장 직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 연봉 기본 운영에 대해서 넣어 놓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 센터장님 직원만 있어요. 팀장이라는 직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안한게 대체휴일 운영상에 시간외수당 4시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15시간인데 그사람들에게 오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 휴일을 주고 말해야지. 지금 15시간을 주는걸로 되어있잖아요. 근데 그사람이 대체일을 2번했어요 그럼 15시간이 오바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4시간을 주는것보다는 대체휴무를 주는게 좋겠다.

아울러서 경조사 휴가에 공휴일을 제하게 규정되어있죠. 자 그런데 내가 봤는데 특별휴가 일수표가 결혼할 때 본인이 7일입니다 지금 주5일제를 근무합니다. 5일로 줄여야 맞아요. 근데 이것을 옛날것으로 그대로 해놓고 공휴일을 없는 걸로 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9일을 쓴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나중에 그 그 뭐냐 연말에 연가보상비주죠.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5일제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본인 결혼할 때 7일이 맞는데 지금도 이규정은 도가 바뀌어있거든요. 5일로여.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 규정상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외한다고 연가일수에서 빼면 안된다. 연가일수를 빼면은 9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또 하나 업무용차량에 관한 경우입니다. 지금 5년 이상의 또는 10만키로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잘못 나온겁니다. 요새 차가 5년짜리가 없고 더군나나 업무용차량은 7만키로 및 총 12만키로를 2개를 충족합니다. 뭐얘긴지 압니까? 5년이상 및 12만키로 이상은 폐차를 할수 있다. 그 규정은 잘못 된거다. 10만키로 이상 및 12만키로를 기관은 충족 해야한다. 고문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할얘기가 많은데 제의견만을 하겠습니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보면 사업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도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이 있는데 대체휴무를 하면은 대체휴무를 쓰면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잘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해주려고 고 규정을 만든겁니다.

이사 송태화

아니 아는데 그럼 15시간 초과된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아니 그런 사람들 그 대신 대체휴무를 쓰라는거죠,

이사 송태화

알았어요. 소방직공무원들이 충청남도만 소송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15시간밖에 안주잖아요 지금. 휴일날 근무하는사람이 많은데 그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때 소송 이길 자신있습니까? 대체휴무또는 시간외수당 4시간 지급 할수 있다. 그래서 무슨얘기냐 하면은 기본 15시간을 주면 4일하면 15시간 나오잖아요. 하루에 4시간이니까 그런데 그게 오바했을때에.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시간외수당 신청은 원장님 사전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오바하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이제 예 지금 안전이 제일 문제되는게 지금 예민한 것이 업무용차량도 있지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인사규정은?

이사 장기수(원장)

지적하신건 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업무용차량은 뭘 살려그러죠?

이사 장기수(원장)

엑센트 살려고 그러합니다.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엑센트를 사지말고 스타렉스를 사 저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가 차를 좀 여직원이나요 본인들이 회의때 많이 쓸거기 때문에 스타렉스는 너무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기 예산관련해서 송태화이사님이 충분히 지적하셔서 그렇게 좀 배려해주셔서 통과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이사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회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뭐냐면 또 늦어지는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하나의 제가다 설명을 해야되는데 연봉포함해서 늘어나는것에 대해서 또 몇개월을 싸워야 될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이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시어머님이 한 두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은 도와주고 계시지만 다른분들은 저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주신다 제가 감안하구요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는걸로 하고 하면은 수정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컷속말로 말씀드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기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지. 충분하게.

이사 장기수(원장)

지적말씀 감안해서 하나하나 그나마 방법 찾고 방법 찾고 우리 팀장님 찾아뵙고 본청 찾아뵙고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해서 하나하나 코드를 맞춰 온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식 고민해서 내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고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도와주셔서 많이 늘었고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면은 잘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방법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별 이사님들께 말하겠습니다.

### 이사 송태화

다음에 좀 더 하고 일단은 저기 이사님들 어렵지만 직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하니 의결해주시는 쪽으로 가시죠.

###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일단은 보수규정 제3호에 관한 제7조 하고 복리후생 제 27조 이때 예 그렇죠? 예 27조 그 판거 뭐있나? 연봉이거 하한액기준 이거에 대해서는 요기서 결정해도 되는 건가 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을 할 필요가 있나? 천만원씩 한꺼번에 다 올려놨는데. 이거 이전에 천만원씩 올려줄 수 있어? 이거 연봉을? 이것은 말이 안맞아. 이것도 정부지침에서 이것을 이거 상한액과 하한액을 공고한 게 있을거야. 1.7%면1.7%, 3%면 3%로 그걸 고민해서 이걸 조정 한번해요 무슨말인지 알아들었죠? 이거 개정안을 정부가 공고한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요. 이게 천만원씩 올려놓으면 이사회를 걸다리 이사회로 볼 수 있으니까 무슨말인지 알아들었죠? 정관에 맞는 예. 그럼 이걸 그대로 가는걸로. 연봉을 천만원씩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여, 규정에 맞춰서 한겁니다.

그리고 가는걸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거 같죠 의안이 그렇죠? 어떻게 의원님들 그거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제수당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줄수 있으면 하고 별도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을 가서 내가 검토하고 도에 가서 보고서 제수당을 포함을 시키는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가서 결과보고를 이사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해야 하니까.

### 이사 송태화

다 수정합니다. 지금 앞에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상에 연봉 제한다 다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관된거 다 포함된다고 고치는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뒤에 전체가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짝 고쳐야 돼요



계약서도.

이사 윤영우(이사장 대행)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하실 이사님은 안계시죠? 토론을 종료를 하자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음으로 상전 안전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안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에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합니다. 의의가 없음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2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 3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수정할 부분 수정안대로 결정된 부분 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하는걸로 해서 저기 그 보수규정은 수정 할 부분은 수정하는대로 기타부분은 기타부분대로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예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안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사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안 업무용차량관리 규정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수정했습니다. 기본이 7년 이상 및 총 12만키로 이상00 지침이예요 지침. 업무용차량 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진흥원이 제출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소년진흥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안 2015년 급여 인상 지급안에 대해서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 인상이야? 그것이야 그거? 그거 맞지 급여인상안이니까. 예예 그러면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세요 기타부분은 청소년진흥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제 7호 2015년도 급여인상 지급안에 대해서 수정할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청소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의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음으로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안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청소년진흥원에서 제안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청소년진흥원에서 원안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음으로 재단법인충청남도 2015년도 본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